

#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련 이의신청 처리지침

## 제 1 조 (목적)

동 지침은 본 대학원의 입시전형과 관련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(이의신청의 접수)

- ① 본 대학원의 입시전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제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원 '입시전형위원회'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처리한다.
-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입학전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'이의신청처리심의 소위원회'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 3 조 (이의신청처리심의 소위원회)

- ① 입시전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3인 이내의 '이의신청처리심의 소위원회'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후 위원장에게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시전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.

## 제 4 조 (이의신청에 대한 진상조사)

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제기된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기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입시관리본부에서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## 제 5 조 (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)

-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신청 관련 사항에 대한 입시관리본부의 진상조사 결과가 제출된 경우, 위원장은 지체없이 입시전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## 제 6 조 (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 및 결과통보)

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본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